

### <녹 취 전 문>

과제명	2018년도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채록		
구술자명	황도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면담자	이인호	면담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자택
면담일시	2018. 10. 23. 14:40	회차	1회차

#### 1. 근황 및 사법 철학

면담자: 이 면담은 헌법재판소가 주관하는 2018년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채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제2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님들이 퇴임하시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그분들의 과거의 재판 경험과 헌법 철학을 구술을 통해서 헌법재판의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술하실 분은 1기와 2기 헌법재판소에 걸쳐서 헌법재판관을 지내신 황도연 전 헌법재판관님이십니다. 지금은 2018년 10월 23일 오후 2시 40분, 이곳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록마을에 있는 재판관님의 자택입니다. 면담자는 이인호 중앙대학교 교수입니다. 먼저 황도연 전 헌법재판관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재판관님은 1962년에 판사로 임관하셔서 각 지방법원장과 광주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1991년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시기까지 29년간 법관으로 봉직하셨습니다. 재판관님은 1기와 2기 헌법재판소에 걸쳐 헌법재판의 토대를 닦으시고 1997년 8월에 퇴임하셨습니다. 밝고 곧은 성품을 지니신 분으로 깔끔하고 균형 잡힌 재판 진행과 명쾌한 판단을 내리는 판관이라는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관님, 1997년 8월에 퇴임하시고 2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구술자: 처음 약 6년간은 서초동에서 단독 개업을 했고 그 뒤 2003년 6월부터 약 11년간은 신촌에 있는 '범무법인 신촌'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6월 30일 제 공증업무 정년이 됐어요. 그것을 계기로 그 법인에서도 퇴직했을 뿐 아니라 아예 변호사 휴업계를 냈습니다. 그로부터 집에서 쉬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쉰 지가 4년 정도 됐습니다.

면담자: 그래도 언제 봐어도 참 건강하십니다. 퇴임 후에 특별히 혹시 관심을 가지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술자: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면담자: 재판관님께서 1962년에 판사로 임관하셔서, 29년간 법관으로 봉직하시는 동안에 어떤 사법철학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셨는지요? 혹시 지금의 후배 법관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면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면담자: 뭐 특별히 사법철학이라 하는 것은 없었고요. 저희들 때 우선 ‘청렴결백’이야 모든 법관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태도니까 그걸 저만의 사법철학이라 할 수도 (없고), 당시에 대다수 법관들이 청렴결백했습니다. 별로 비난받을 판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주문을 잘 내려고 신경 쓰는 것도 모든 법관에게 공통적인 것이니까 그것도 저만의 사법철학이라 할 수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형사 재판할 때는 아주 관대한 형이든 중형이든 간에 피고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양형을 하려고 나름대로는 노력하였습니다.

면담자: 피고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양형이란 주로 어떤 것입니까?

구술자: 쉽게 말하면, 미지근한 양형이 아니고 관대하려면 아예 관대히 하든지 엄벌을 하려면 아주 엄벌을 하든지 해서 피고인 머리에 남도록 하는 거죠. 표현이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미지근한 형은 피고인에게 감동을 못 줘요. 말하자면 형사재판으로서는 별로 생명이 없는 재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담자: 일반 형사재판의 형량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대체로 어떻습니까?

구술자: 요즘 우리나라가 좀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비교적 형이 낮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와 보니까 요즘 하는 재판은 형이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면담자: 미국 같은 데는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것 보면 상당히 무거운 형이...

구술자: 예. 그런데 꼭 미국을 따라간다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 정서로 보더라도 어떤 것은 조금 더 엄벌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면담자: 재판관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1991년에 임명되시고 1기 재판소와 2기 재판소의

중간에 걸쳐서 이렇게 6년간 재판을 하셨습니다. 일반 재판과 헌법재판의 혹시 차이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구술자: 글썄요. 그거 참, 어려운 질문인데... 단적으로 생각이 나는 것은 헌법재판에는 역시 '헌법감각'을 터득해야 되는 점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은 제대로 헌법감각을 터득해야 위헌, 합헌 구별이 좀 더 명확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딱 건 특별히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면담자: 헌법감각을 재판관님은 어떻게 (터득하셨습니까).

구술자: 그걸 뭐 어떻게 터득했다 할 수는 없고 제 경험으로는 사람이 둔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제가 헌재에 들어와서 2년쯤 지나서야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좀처럼 안 생기더라고요.

면담자: 그 전에는 헌법재판을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구술자: 그렇죠. 일터를 옮긴데도 일반 재판 오래 하던 게 머리에 남아서 그게 잘 안 생기더라고요. 2년이나 2년 반쯤 되니까 헌법감각이 대개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면담자: 일반 재판은 보통 양쪽 당사자의 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만 헌법재판은 국가의 전체적인 구조를 생각하면서...

구술자: 그 점도 큰 차이고요. 일반 법원에서 하는 식으로 하면 자꾸 위헌 결정을 못하게 된다고요.

면담자: 아, 그렇습니까?

구술자: 그런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면담자: 그 말씀은 법관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따라야 되고...

구술자: 그렇지. 대개 법률(일반 재판)은 합헌적으로 되어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

인데 헌법재판은 좀 다르니까. 그걸 굳이 표현하면 ‘헌법감각’이랄까 뭐, 그래서 얘기한 것입니다.

면담자: 1기, 2기 때는 헌법재판하시는 중에 위헌 결정이 꽤 나왔던 것 같습니다.

구술자: 그렇습니다.

면담자: 당시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까?

구술자: 그런 건 특별히 없었는데, 그때는 우리 법률이 아직 정비가 잘 안되어서 사실 위헌적인 법률이 많아서 그랬을 것입니다.

면담자: 또 권위적인 정권하에서 무리하게 좀...

구술자: 양산이 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더 그랬을 것입니다.

## 2. 헌법재판관 시절 회고

면담자: 재판관님께서서는 1기 재판소와 2기 재판소에 걸쳐서 재판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헌법재판이 이렇게 활성화된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1기와 2기 때에 쌓았던 반석 위에 헌법재판이 올려져 있다, 지금의 헌법재판소의 이런 활성화도 결국은 1기, 2기 재판 때의 그런 노력과 헌신에 기초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시 초창기에는 헌법재판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활성화되리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1기 헌법재판소 당시 어려웠던 사정이나 상황에 관해서 말씀들을 듣고 싶습니다.

구술자: 어려웠던 것은 저는 개소한 지 3년 뒤에 가서 잘 모르겠고요. 1기 재판이 비교적 그렇게 국민적 신뢰를 받았다면 저는 대개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싶어요. 첫째는 신속한 사건 처리보다는 신중한 사건 처리 쪽에 더 치중했던 것 같습니다. 둘째는 여론이라든지 시류라든지 또는 외부의 무슨 압력이라든지 그런 것에 비교적 안 흔들렸지 않나, 그 뭐 상대적인 얘기입니다만 비교적 안 흔들렸지 않나 생각합니다. 셋째는 대개, 제 경우도 대법원장이 지명한 케이스였는데, 지명 또는 추천해 준 기관이나 소속 정당의 취향이나 희망을 귀에 담지 않고 무시한 재판을 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외람되게 말하면 지사(志士)적인 재판을 했던 게 아닌가 합니다. 그게 아마 신망을 받았다면 받은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면담자: 1기와 2기 재판관님의 역량이나 신망은 아주 두터웠습니다. 국민들로부터도 상당한 호응을 받았고요. 정치적으로 재판이라는 거는 뭐,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만 정치권으로부터의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되고 독립되어야 되고 또 한편으론 여론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하고…

구술자: 그렇죠. 그런데 제가 거기 있을 때는 솔직히… 외부의 정치적 압력같은 건 없었습니다. 1기도 아시다시피 조규광 소장이라는 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 돼서, 청와대고 어디고 감히 헌법재판소에 뭐, 입을 댈 엄두를 못 냈다고요.

면담자: 아, 그랬습니까? 초창기 헌법재판소라는 곳은 신생 기관인데…

구술자: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헌재를 잘 키우려고 무척 애를 썼고요. 아무튼 그때는 조금 과장된 표현을 하면, 모두 지사적인 자세로 일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면담자: 혹시 조규광 소장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구술자: 그분은 뭐, 아시기도 많이 아시고, 아주 끈은 분이고. 유명한 분이죠. 그리고 굉장히 꼼꼼한 분입니다.

면담자: 당시 정권에서 거의 간섭을 할 수 없는 정도이셨습니까?

구술자: 가만있자. 그때 얘기를 하나 하면, 우리가 청와대 초청으로 가서 청와대 회의실에 오찬식사를 하려고 모여 앉아 있는데… 그때가 김영삼 대통령이던가? 노태우 대통령인가? 왔다 갔다 하네.

면담자: 1995년이면…

구술자: 우리가 간 건 노태우 대통령 때인 것 같은데. 제가 발령받은 때는 노태우 대통령이 있을 때니까. 죽 앉아 있는데 딱 앉자마자 조 소장이 대통령에게 제가 소청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좀 긴장하는 듯 했는데, 이 어른이 내가 담배를 피워야 되

졌는데 재떨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동석한 청와대 참모들이 빨리 재떨이 가져 오고 담배 가져오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청와대가 금연구역인데 모두 담배 놓고 재떨이 놓고 난리가 났어. 그거 아무나 잘 못하는 겁니다. 청와대에서도 저 노인 못 건드리는 노인이다,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일도 오늘날 현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됐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 많이 아시고 굉장히 꼼꼼한 양반입니다.

면담자: 그때는 그러면 대통령과 재판관님들이 식사하는 자리가 한 번씩은 있었던 것이네요.

구술자: 자주는 없어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과 언제 회식할 때 또 따라간 적도 있어요.

면담자: 그런 자리가 뭐 혹시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하지 않습니까.

구술자: 에이, 에이, 그 자리에서 재떨이 달라 하고 담배 달라 하는데 뭐, 어림도 없었어요.

면담자: 그랬겠습니까.

구술자: 그런데 청와대에서 압력 같은 것 없었습니다. 청와대, 안기부 이런 데에서 압력 없었습니다. 아예 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하나도 없었어요.

면담자: 혹시 국회 쪽에서는 어땠습니까.

구술자: 국회 쪽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아예 구성이 그러니까 별로 말이 없었어요. 만만하게 못 봤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면담자: 중요한, 위상을 정립하는 데는... 여론의 영향은 없었습니까.

구술자: 여론에도 비교적 초연했습니다. 여론은 여론이고 우리는 헌법과 법률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별로 안 그랬습니다.

면담자: 여론대로 했으면 결론이 다르게 난 재판도 많았습니까?

구술자: 그것도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큰 영향은 없었을 거야. 하여튼 여론대로 안 했으니까. 별로.

### 3. 2기 재판부에서 주심으로 다룬 사건들

면담자: 재판관님께서 2기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었던 주요 사건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심으로 맡았던 사건이 몇 개 있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995년도에 선고된 사건인데 1979년 12.12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그 불기소 처분을 헌법 위반이라고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이 사건은 나름대로 역사적인 과거 청산과 관련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 지었던 과거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논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판관님께서 당시에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일곱 분이 정지되어야 한다고 의견 내셨고...

구술자: 맞습니다.

면담자: 주심이신 재판관님께서서는 오히려 소수의견이셨습니다.

구술자: 저하고 김문희 재판관 둘이서 그랬지요.

면담자: 김문희 재판관님과 황도연 재판관님 두 분께서 소수의견을 내셨습니다. 주심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견으로 내셨는데. 혹 그때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구술자: 그때는 대개 분위기가 대통령 재임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이슈였는데, 그래서 책도 많이 들쳐보고 일본 제도도 보고, 결국은 시효제도의 본질에 들어가서 민사 시효와 형사 시효의 연혁에 대해 보게 됐습니다. 보니까 같은 시효이지만 그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옛날에는 시효 정지 사유가 너무 많은데 근세법에 와서는 정지 사유를 전부 개별적, 구체적으로 제한해 가지고 그 사유가 없으면 정지를 안 시키는 것으로 돼 있고, 또 나라마다 정지 사유가 틀리더라고요. 우리 경우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한다는 것에 대해 아무 규정이 없습니다. 명문 규정 없으면 그걸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대통령도 범죄인으로서의 법적 안정성을 누려야 할 기본권이 있는 사람인데 그럴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소신대로 했는데, 아무튼 두 사람뿐이었고 다수의 의견은 정반대였죠. 지금

생각해 보면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저희는 반대의견입니다만, 앞으로는 대통령 재임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다가 임기를 마치면 그때부터 진행이 되는 것으로 명확한 법률규정을 두는 게 좋겠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수의견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면담자: 당시의 여론의 관점에서 보면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을 처벌해야 된다는 분위기였죠.

구술자: 그건 그랬었죠.

면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관님께서서는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구술자: 그러한 경우 우리 헌법에는 공소시효나 그 정지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또 법률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니까요.

면담자: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

구술자: 그런 것 없어요. 없어서...

면담자: 헌법과 법률에 규정이 없는 이상...

구술자: 못 하는 것 아니냐...

면담자: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없는...

구술자: 사실은 정지 사유라는 게 민사 시효와 형사 시효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데, 지금 와서 옛날식 민사 시효의 법리를 따르는 게 안 맞는 게 아닌가 해요. 지금도 그 소신은 (변함없고), 전 소신에 반하는 것을 한 건 아닙니다.

면담자: 당시의 재판관님께서서는 법적 안정성, 그리고 피고인의 이익에 대한...

구술자: 대통령도 결국 국민이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소수 의견은 우리 두 사람뿐이었어요.

면담자: 아마 그때 분위기상으로는 용기 있는 소수의견으로...

구술자: 뭐 용기는... 아무튼 그건 (소수의견)이고. 다수의견을 보면 당연한 법리라고 말하는 데, 당연한 법리가 어디 있습니까? 실정법 근거 없이 함부로 자꾸 유추해석하면 되느냐 말이지.

면담자: 법치주의 관점에서...

구술자: 네, 그렇습니다. 저는 법치주의,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그런 것을 좀 고지식하게 우겼던 것 같아요.

면담자: 좀 엄격하게...

구술자: 예, 그것으로 위헌결정 많이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면담자: 그 당시에 재판관님들 사이에 이렇게 (격론하는 분위기였습니까).

구술자: 뭐 그건 의견 차이니까, 우리는 거기서 토론은 토론이고, 끝나고 나면 각자의 견해가 다른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면담자: 들리는 바에 의하면 과거에 1기 재판부 때는 상당히 그 구성도 다양했고 또 정치인을 하셨던 재판관님도 계시고 그래서 상당히 격론이 벌어지고 서로 고성도 오가고...

구술자: 그랬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험악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 소장이 사회자인데 조 소장도 감당을 못 해 가지고 말이죠. 아주 개성이 강한 분이 몇이 있어서 고래고래 고향지르면 소장도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있어요. 그만큼 토론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거침없이 토론한 거죠.

면담자: 그렇군요. 12.12사건도 그 정도...

구술자: 12.12사건 때는 별로 그렇게 안 그랬던 것 같은데요.

면담자: 이것은 2기 재판부 때 사건...

구술자: 예. 조금 그런 것도 있었고. 오히려 격론은 1기 때 많았죠. 이상하게 12.12사건 때는 별로 안 그랬습니다.

면담자: 어느 정도는 분위기가 진정이 된 상태에서...

구술자: 그리고 네, 네. 그 사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이 내란죄에 관한 부분은 그건 그냥 넘어가 버렸고 그 외의 상당 부분은 기소유예 처분을 해버렸으니까. 기소유예 처분이 맞나 안 맞나 그걸 가지고 격론한 건데. 그것도 뭐, 이의 있다 하면 내 의견은 이렇다, 당신 의견은 그렇다 하며 넘어갔지. 그것 가지고 다투진 않았습시다.

면담자: 결국은 불기소 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았습시다.

구술자: 그랬죠. 내란죄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볼 때 벌써 공소시효가 완성됐어요. 청구인 측 은 내란죄를 12.12사태가 일어난 뒤의 일련의 과정을 전부 한 범죄라고 봤는데 그거는 (아니죠). 우리는 종전의 학설이나 판례로 볼 때 내란죄는 폭동이 일어나서 그 지방의 평온이 깨졌다가 그것이 끝나면 범죄는 기수로 봐야지 그때 그 여파로 일어난 걸 다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12월 13일, 그 다음날에 폭동은 끝났으니까 그때부터 계산하니까, 15년의 공소시효 기간을 계산하니까 다 지나가 버렸어요.

면담자: 같은 해네요. 1995년도에 다른 사건입니다만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가 워낙 벌어져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인구수로 비교하면은 4 대 1이 넘어가는 인구 편차가 벌어지는 선거구들도 있었습시다. 그래서 그것이 사건화돼서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적인 사안, 국회의원의 선거구, 인구 편차에 관해서 처음으로 다른 사건인데...

구술자: 맞습시다. 처음 하는 사건이에요.

면담자: 아주 의미 있는 중요한 사건인데, 재판관님께서 이 사건도 주심을 맡으셨습시다.

구술자: 네, 그랬습시다.

면담자: 그 당시의 재판관들의 의견은 모두 다 사실 위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섯 분이 위헌이고 다른 네 분도 같은 위헌의 의견입니다만 약간 그 이유가 조금 달랐습니다.

구술자: 예, 달랐죠.

면담자: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이야기해주시오.

구술자: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의 자료나 제도도 광범위하게 검토했습니다. 인구편차라는 게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단원제이고 소선거구제의 국회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의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가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지만 그것 말고 다른 것도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 고려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요소도 가미가 되어 있어서 매우 어렵더라고요.

평의를 해 본 결과, 다수의견 즉 저를 포함한 5인 의견의 요지는, 법리로 말하면 최대선거구의 인구수가 최소선거구의 인구수의 2배 이상인 때에는 위헌이 되고, 그 여타의 제2차적 고려 요소를 아무리 크게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갑절인 4배를 넘는 경우 즉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율이 4:1을 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는 것이고, 소수의견 즉 4인 의견은 우리나라의 여러 특수사정도 감안하여 인구비례의 원칙은 물론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 도시와 농어촌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3개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수에서 상하 60%의 편차를 초과함(여기까지는 위 5인 의견과 같음)과 동시에 같은 유형(도시 유형 또는 농어촌 유형)의 선거구 평균인구수에서 상하 50%의 편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위헌으로 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와 김문희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세 사람은 위 4인의 소수의견에 대하여 비판적인 다수의견의 보충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우리 보충의견의 요지는, 선거구획정에 대한 위헌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헌법이 우리 재판소에 준 잣대는, '투표가치의 평등'이 침해된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보라는 것 뿐이다. 즉, 우리 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어느 범위안에서 허용할 수 있는가라는 소극적인 기준, 다시 말하면 선거구간의 인구의 최대편차에 대한 한계수치를 밝히려는 것일 뿐 국회가 그 재량에 따라 정책적 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인구 이외의 다른 여러 요소들의 고려한도에 대해서까지 판단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면담자: 그렇게 자세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입법을 하는 것이다...

구술자: 그렇죠. 우리가 입법을 하면 되겠느냐?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면담자: 그때 재판관님은 5인의 다수 의견에 속하시면서 보충의견을 또 써 주셨습니다.

구술자: 김문희, 신창언 재판관과 저 세 사람의 의견인데, 주로 김문희 씨가 썼어요. 그분이 말하는 게, 헌법재판소가 만능이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지 그 외에 그 지역이 농어촌이나 도시냐에 따라 다르게 보자는 것은 우리의 권한 밖이다. 옛날 미국의 어느 연방대법원장이 “국회의원은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지 무슨 숲이나 지역의 면적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정당한 자격을 갖춘 유권자인 한 국민은 그가 도시에 살고 있든 시골에 살고 있든 한 사람의 유권자일 뿐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인구편차에 관한 우리의 보충의견은, 어느 시점에 가면 먼 훗날에는 2 대 1만 넘어도 안 된다고 하자, 그때는 현재도 2 대 1 넘으면 위헌결정을 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면담자: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구술자: 그렇게 되었습니까?

면담자: 1995년도에 재판관님 하실 때는 인구편차가 상한 인구수가 하한 인구수의 4 대 1로 벌어지면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후 2001년의 결정에서 3 대 1로 낮췄습니다. 다시 또 최근입니다, 2014년 2 대 1로 낮췄습니다. 결국은 그때 재판관님께서...

구술자: 우리 보충의견으로 되었네.

면담자: 궁극적으로는 그때 재판관님이 보충의견 낸 게 이루어진 셈입니다.

구술자: 그때 김문희 재판관이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들어보니 그 말이 맞고. 그래서 우리 세 사람이 보충의견을 폈었죠.

면담자: 지금 2 대 1로 벌어지면 또 한편으로는 농촌지역에...

구술자: 글썸, 그것 또...

면담자: 넓은 지역에 걸쳐서 행정적으로나 생활권역이 전혀 다른 영역에서 한 명이 국회의  
원, 대표로...

구술자: 글썸. 현실적으로는 지금 우리 국회의원은 지역 대표성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것도  
좀 문제는 있어. 2 대 1로 하는 게 헌법 이념상으로는 옳으나, 현실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면담자: 그러나 1995년도는 사실 4 대 1이라는 너무 큰 편차가 있었죠.

구술자: 네, 맞습니다. 그때는 뭐 그 이상 해 버리면 너무... 안 돼. 그 정도는 했어야 됐어요.  
초기니까. 그래서 할 수 없어 보충의견을 쓰고 그랬어요.

면담자: 그 사건에서 재판관님, 소위 게리맨더링 사안도 안에 담겨 있었어요.

구술자: 있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거기 어느 군이냐 몰라.

면담자: 영동군하고 보은군을...

구술자: 그렇죠. 옛날 한 선거구였는데 그 가운데 다른 어떤 선거구가 하나 끼어든 바람에  
떨어져 있는 두 선거구를 하나의 선거구로 묶은 것으로서 그건 안 된다. 외국에서도  
그건 헌법 위반으로 보았어요. 그건 반대 의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면담자: 그래서 최초로 인구 편차 위헌 결정이면서 또 게리맨더링도, 사회적인...

구술자: 예. 그것도 못하도록. 그때부터 멀리 떨어진 건 못 하도록. 적어도 붙어야 되는데. 생  
활권이 다른데 어떻게 하느냐...

면담자: 아주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혹시 외국 자료를 많이 참고하셨습니까?

구술자: 더러 봤습니다. 연구관들이 고생했죠. 많이 봤더라고요. 봐도 나라마다 각각이고요. 판례도 각각이고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 머리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별 참고가 안 되더라고요.

면담자: 그래도 헌법재판을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외국과 비교법적 분석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비교법적 분석을 해도 결국은 우리 현실에서의...

구술자: 그럼요. 참고 자료지, 그걸 그대로 써 먹을 순 없죠.

면담자: 1997년도에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결정에 있어서도 또 주심을 맡으셨습니다. 동성 동본 혼인 금지 사건입니다. 아시겠지만 동성동본 금혼 제도로 인해서 그동안 동성 동본이라는 이유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1997년도에 사실상 위헌 결정인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수 의견은 단순 위헌으로...

구술자: 그렇죠.

면담자: 당시 재판관님도 다수의견인 위헌 의견으로 결론을 내주셨는데요. 이 사건은 아마 헌법재판소 아니었으면 정치권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구술자: 맞습니다.

면담자: 당시의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구술자: 그 사건이 말이죠. 소장 외에 재판관 여덟 명에게 다 사건이 배당이 됐어요. 나한테만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나만 주심이 아닙니다. 여덟 사람이 다 주심이었던 것이죠.

면담자: 사건이 워낙 많아서...

구술자: 이것저것 많아 가지고. 그렇죠.

면담자: 아, 예.

구술자: 그런데 공교롭게 제가 사건번호가 제일 빨랐어요. 그러면 사건번호가 제일 빠른 사람이 모아서 처리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그해 8월 25일 퇴임했습니다.

면담자: 아 그랬습니까? 7월 16일 선고 나오고...

구술자: 약 한 달 뒤 퇴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퇴임 날짜를 한 달쯤 받아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것은 누구든지 한번 총대를 메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결국 아무리 욕을 들어도 내가 하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김 소장님이 좀 보자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황 재판관한테 강요할 수는 없는데 이왕 주심을 맡았으니까 깨끗이 일 하나 마쳐놓고 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죠. 아까 말했듯이 국회는 오래 전부터 표 때문에 의결을 못 하는 거야. 여성표와 유림표가 맞서 가지고... 그건 현재 아니면 절대 손 못 댁니다. 우리 국회 생긴 이후부터 생긴 문제인데도 몇 십 년 자꾸 끌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론상은 옳을지 모르지만, 헌법불합치 결정만 하면 또 몇 년을 더 흘러갈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저를 포함한 5명은 단순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면담자: 실제 그 당시에 그 기한을 잡아주시고...

구술자: 그렇지, 1999년 1월 1일이던가...

면담자: 국회가 그 기한을 결국을 지키지 못하고 넘기면서 그냥 조항이 무효화되어 버렸는데요.

구술자: 그러면서 이제 새로 입법을 하긴 했대.

면담자: 근친혼 금지로 바뀐...

구술자: 네, 네, 그렇게 바꾸었던 것 같아요.

면담자: 당시의 결정에 따라서 국회도 결과적으로는...

구술자: 그런데 저희도 여담입니다만, 그 재판을 참 잘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후 사석에서 우리 초등학교 동창이 열 명쯤 모여서 술 한 잔 먹고 저녁을 먹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어. 몇 사람이 ‘자네가 좋은 일 했더라’고 말하기에, ‘좋은 거고 뭐고 나는 집안에서 옥도 얻어먹고 만신창이가 됐다’고 하니까, 그 중에 세 사람이 나중에 와서 고맙다 한 게 열 사람 중에 세 사람이 자기 자녀 중에 동성동본 혼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놀랬어. 열 명 중 세 사람이 우리 손자가 지금 학교 입학 못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혼인신고 접수를 안 해 주니까. 그래서 그건 역시 잘 풀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네요.

면담자: 집안 어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구술자: 제 경우도 상당히 압력이 있었는데. 심지어 종손이라는 양반이 웬만하면 자네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슬쩍 미뤄버리고 나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자랑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공인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공인은 그러면 안 된다 싶어서... 그때 김 소장님이 많이 감사해 하더라고요. 골치 아픈 것 하나 해결해 주고 간다고. 그때 또 연구관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료 많이 찾았습니다. 그 제도의 연혁부터 조사하려 하니 별별 책을 찾고 고생했어요. 연구관들이 고생 많이 했어요.

면담자: 요새는 동성동본 금혼 제도가 중국에서부터 유래해서 온 것이냐, 아니다 하는 논쟁이...

구술자: 제가 그때 보니 중국에서 유입되어 온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중국은 1930년대 그 법을 없애버렸습니다. 중국에서 왔는데 거기서는 없애버렸거든. 그런데 우리만 고지식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때요, 이 동성동본이라는 것이 제일 인구가 많은 성씨가 김해 김씨, 밀양 박씨, 전주 이씨인데, 김해 김씨가 1985년도에 몇 백만 명이야. 몇 백만 명이 서로 혼사를 못하는 거야. 또 하나는 요새 젊은 사람들이 연애하면서 말이죠. 본관이 어디냐 알아보고 연애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막 좋다면 좋다 하지. 또 본이 같다고 해서 우리 이제 갈라지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현실에 안 맞는 법이거든요. 제일 결정적인 이유가 말하자면 사회의 변화에 못 따라오는 제도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행법만 하더라도 상당한 금혼 제도, 금혼 범위가 있거든요. 그것만 지켜도 충분하고. 또 그때 우리가 우생학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동성동본이 열두 촌만 넘어가면 남하고 똑같게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생학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법을) 놔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면담자: 예. 두 분은 결국 그 금지되는 촌수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는 입법자한테 맡겨두자...

구술자: 헌법불합치 그거죠.

면담자: 또 반대하셨던 것은 국회 가면은 또 안 될 것이다...

구술자: 또 안 돼요. 국회가면 유럽이 들고 일어나고 침례하게 대답이 될 텐데. 국회 가면 그런 거 손도 못 대. 그래서 끝을 내버렸어요.

면담자: 단순 위헌을 통해서 끝을 내야 된다...

구술자: 여담입니다만, 그때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신 분이 와 가지고 저도 같이 따라가자고 하는데, 따라가면 그게 이상하게 돼버린다고.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난 욕을 먹어도 단순위헌이라고 버텼어요.

면담자: 그 안에서 재판관들끼리 서로 1 대 1로도 서로 의견을...

구술자: 왔다 갔다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어떨 때는 설득하러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리 했죠.

면담자: 그때, 저도 기억나는 것은, 선고 하는 날 유럽에서 헌법재판소에 왔는데. 헌법재판소 앞에서 데모를 하셔서...

구술자: 웃겼습니다. 한번은 제 사무실에 유럽 대표가 왔는데, 충청도 어디 있는 사람인데 갖 쓴 영감이 하나 있어요. 국가 행사만 있으면 나오는 풍채 좋은 영감이 하나 있습니다. 제 가계(家系)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고 왔어요.

면담자: 그럼 사무실로 왔는데,

구술자: 사무실로 왔어요.

면담자: 수용하십니까?

구술자: 유럽 대표가 면회 왔다는데 굳이 안 만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만나면 더 이상 하고... 모시라 했지. 그러니까 갓 쓴 노인도 왔는데 차 대접하고 정중히 예의를 차렸죠. 재미있는 게 그 노인 말이 우리가 다 조사를 해 봤는데 영감은 절대로 위헌을 안 할 유형이고 다른 사람 중에 위헌을 할 타입이 있으니 영감이 위헌하려는 사람 잘 설득해서 합헌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 보겠다 했지. 거기서 해 보겠다 하지 굳이 싸울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데모할 때 보니 그 영감이 맨 앞에 서 있더라고요.

면담자: 재판관님한테 배신을 당했다고...

구술자: 그래 생각할지 모르지요. 진짜 그건 시대적 유물인데 버리고 가야지요. 그리고 요즘 동성동본 결혼 많이 안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면담자: 그 당시만 해도 10년 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재판이었다고...

구술자: 글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러 곳에서 그 재판은 잘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은근히 젊은 사람들의 동성동본 결혼이 상당히 많았던가 봐요. 그리고 또 하나, 민법제정 이후 사실혼관계에 있는 동성동본혼을 구제해 주는 특례법이 세 번 나왔습니다. 이 특례법 시행기간 내에 신청하면 쌍방이 동성동본이라도 혼인 신고를 받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1978년, 그 다음은 1988년, 그 다음은 1996년경 세 차례 시행되었는데, 그때마다 신청자가 자꾸 증가하여 모두 몇만 명이 구제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이 제도가 금혼규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민법에는 부모를 알 수 없는 자(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姓)과 본(本)을 창설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혈연과는 전혀 무관하게 동성동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동성동본이라는 것이 이제는 혈연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의 기능까지도 상실했다고 보여집니다. 그야말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결국 이 제도(동성동본금혼제도)는 어느 모로 봐도 안 되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면담자: 아주 의미 있는 결정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사랑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재판관님께서 깊이 관여하셨던 사건들이 많으셨는데 혹시...

구술자: 그런데 그건 뭐, 한마디 더 하자면, 어느 사건이라기보다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기  
까 법치주의랄까, 적법절차의 원칙, 특히 죄형법정주의에서의 명확성의 원칙, 그것에  
반하는 그런 법률 규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감하게 위헌 선언을 했던 것 같아요.  
소수 의견도 더러 쓰고. 다수의견도 많이 썼는데, 지금도 그런 재판에는 후회한 일  
이 없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면담자: 재판관님께서서는 법적 안정성을...

구술자: 그럼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닌가요? 죄형법정주의에서 죄가 불명확하면 사람 잡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범죄인지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처벌하라는 말인지...

면담자: 예, 혹시 기타 재판관님이 기억나시는...

구술자: 뭐 없습니다. 뭐 더는 없습니다.

면담자: 많으실 텐데요.

구술자: 아닙니다. 더는 없습니다.

#### 4. 1,2기 재판부 비교 및 대법원과의 관계

면담자: 혹시 1기와 2기 재판소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1기 재판부와 2기 재판부가 차이 나  
는 특징이 있을까요?

구술자: 특징? 별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1기나 2기나 다 구성원들이 다양한 것 같았습니  
다. 가령 순수 법관, 검사, 변호사, 정치인 뭐 1,2기 거의 그렇습니다. 다만 그 구성  
원의 칼라가 1기 때가 더 선명했던 것 같아요. 2기는 별로 안 그랬는데 1기는 선명  
했고. 또 하나의 차이는 1기는 알다시피 판례를 창조해야 되는 입장인니까 자연히  
격론하고 토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2기에 들어와서는 상당 부분이 판례가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에 판례 답습만 하면 우선 사건 해결이 되니까 1기만큼은 격렬한  
토론은 좀 적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면담자: 1기와 2기 재판부의 재판관들은 말씀하신 대로 구성이 다양했습니다.

구술자: 그럼요. 다양했습니다. 이게 다양해야 됩니다.

면담자: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구술자: 딱 이야기입니다만, 1기 때 그 자기 출신 기관의 의사에 구애 안 됐다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로 김양균 재판관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검찰 출신으로 혼자 와 있었는데,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도 한 양반인데, 이 양반이 그때 검찰의 희망에 반하는 의견을 많이 개진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완전히 반역자 같다는 표현을 해도 소신 하나도 안 굽히고... 그게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면담자: 자신을 임명해 준 기관과 관계없이...

구술자: 그렇지요. 현재는 그게 중요합니다. 자기를 추천해주거나 지명해준 기관으로부터의 독립, 그 독립도 매우 중요해요.

면담자: 재판관님은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으셔서 재판관님이 되셨는데 혹시 대법원과 충돌하는 사건도 있었습니까.

구술자: 네, 약간 있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과감하게 했습니다. 내 소신대로 했지 눈치 안 봤습니다.

면담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가 2기 때 조금 그...

구술자: 그래, 그렇게 됐죠.

면담자: 여러 사건이 있습니까만...

구술자: 오래되어 기억이 희미한 데, 고중석 재판관 주심사건 아니었던가(?) 싶은데, 한 두건이 그러했습니다.

면담자: 소위 이○범사건이라고, 최초는 아닙니다만 세무서, 양도소득세...

구술자: 그런 사건이 있었죠.

면담자: 위헌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 법원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재판소에 와서 한정위헌 형태로... 1기 재판부 때도 있었지만 실제로 2기 재판부 때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시면서 대법원하급의 갈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재판관님 생각은 어땠습니까? 한정위헌 결정이...

구술자: 대법원이 자꾸 반대를 하는데, 저는 한정위헌 결정이 우리 헌법 하에서 절대 헌법불합치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정위헌 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실제 독일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담자: 미국에서도 사실 많이 하는데...

구술자: 그렇죠. 저는 계속 제 주심 사건에 있어서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면담자: 그래도 한정위헌 많이 하다 보면 대법원하급 자꾸 충돌하고...

구술자: 네, 그런 건 있죠.

면담자: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한정위헌을 하긴 하셨지만은 상당히 좀 자제하시는...

구술자: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1기 때는 과감하게 했습니다. 아주 과감하게 했습니다.

면담자: 3기, 4기로, 4기로 오면서...

구술자: 많이 적어지는 모양이에요.

면담자: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하려고...

구술자: 그래요? 그건 모르겠네요.

면담자: 적극적으로 하면서 지금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화해할 수 없는 상태... 대법원과 헌

법재판소, 두 최고 기관이 지금 갈등을 계속 노출을 하고 있고 화해되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두 기관이 어떻게 위상을 정립해야 될까요?

구술자: 저는 그 방법론에 관해서는 연구한 바도 없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 실체적인 문제, 복잡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헌법 관계 법령의 개정이라든지 또 법조계 전체의 의견수렴이라든지 국민 대다수의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문제가 있겠지만, 종당에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상부에 서야 옳다고 봅니다.

면담자: 지금은 이제 병렬적으로 두 기관이 있는 셈이니까

구술자: 그렇죠. 결국 헌법 개정을 해야 되겠죠.

면담자: 그거는 이제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그런 구조...

구술자: 그렇습니다. 그럼요. 그래야 헌법재판이 제대로 살지요.

면담자: 예, 재판관님. 재판소에 계시면서 재판관님들 사이에 직무 간의 관계라든지 인간적인 관계에서 에피소드가 있으면...

구술자: 그건 뭐, 역시 그곳도 사람 사는 사회니까 약간 친소는 있지요. 무슨 견해 차이 때문에 인간관계가 소홀해졌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제 기억으로는 어디까지나 토론은 토론이고 인간관계와는 구별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의견을 낸 사람도 같이 이야기 하고 술도 같이 먹기도 하고 그랬죠. 그건 어디까지나 의견 차이일 뿐이죠. 거기에는 초연했던 것 같습니다.

면담자: 평의하실 때는 견해가 다르면...

구술자: 그것도 따지고 보면 견해가 다른데 자꾸 얼굴 붉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 생각은 이렇다 하면 그대로 각자 의견 쓰면 되는 거니까. 특히 2기 이후에 와서는 의견 다른 것 때문에 얼굴 붉히는 일은 거의 없고... 1기때는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면담자: 어느 정도 안정이...

구술자: 1기보다는 많이 적었어요.

## 5. 제도 개선점 및 제언

면담자: 재판관을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보조하는 인력들이 중요할 텐데요.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연구관이라고 해서 로클릭(law clerk)이 존재합니다. 어느 나라나 그런 로클릭들이 재판관님들을 보좌하게 되는데요. 혹시 당시에 1기나 2기 때의 재판연구관으로 파견 나왔던 판사나 검사나 또는 자체연구관, 재판관들의 관계라든지 또 재판관들께서 연구관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구술자: 연구관에게 도움 받는 건 확실하고, 또 도움 안 받고는 일을 못 합니다. 그걸 활용해야 되는데, 다만 저는 재판관과 연구관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직무의 본질에서 보면, 재판관이란 사람은 기록을 보고 평의에 관여하고 결정문을 작성하는 것이고, 연구관이 하는 것은 자료의 수집, 검색, 검토, 종합 등이 추가 되어야 하겠지요.

면담자: 그렇죠. 지금 대법원의 판결문에 비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이 굉장히 깁니다. 재판관님, 그 점에 대해서...

구술자: 그 점요? 예. 단적으로 말하면 저도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짧아져야 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짧게 할 거냐? 그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해 판시에 있어서 불가결한 사항, 말하자면 종전 판례의 일반론이나 지엽적인 것은 빼고 핵심적인 사항만 골라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하면 훨씬 짧아질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또 하나는 요즘 헌법 교과서에 현재 결정문의 원문을, 요지가 아니고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게 더러 나옵니다. 교과서에 실려도 부끄럽지 않게 정확한 법리, 정확한 논리와 용어로 간단명료하게 써야 되겠지요.

면담자: 예, 재판관님, 이건 약간 다른 말씀입니다만 2기 재판부(3기 재판부임)까지만 해도 주심이 표시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주심의 표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문을 어느 분이 쓰셨는지 드러나지 않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알겠습니다만 대외적으로 결정문만 봐서는 어느 분이 결정문을 집필했는지 드러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구술자: 글쎄요. 나도 동감입니다. 주심 표시를 안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

다. 지금 말씀처럼 아무리 합의가 되었다 해도 문장이든지 이론 구성은 쓰는 사람의 취향이나 재량이 좀 베이게 마련 아닙니까? 주심 표시해야 됩니다. 이왕 헌법재판관 정도 하는 사람 같으면 어려운 사건이라도 이름을 딱 밝히고 내가 썼다고 하는 거지, 그걸 감출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주심 표시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면담자: 그걸 통해서 이게 역사적으로 누구의 집필인지 나타나면...

구술자: 그렇죠. 그거 필요하죠. 그래서 잘 못 써도 자기가 책임지고 그래야 되죠. 또 주심을 표시하면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아무래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지금 표시 안 하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면담자: 아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는 말씀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제언이 있거나 또는 현행 헌법재판제도가 조금 개선되거나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시면...

구술자: 예, 한마디만 하죠. 헌법재판소는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외부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어떤 여론의 흐름이나 시류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건전한 상식과 양심에 터 잡아서 헌법에 맞게 헌법 합치적인 올바른 재판을 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표현이 좀 과장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야에 우뚝 선 태산 같은 그런 헌법재판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만 하렵니다.

면담자: 지사 같은 기관...

구술자: 예, 그러니까 광야에 우뚝 선... 그렇게 하려면 재판관 개개인이 어느정도 지사적인 자세와 태도를 안 가지면 안 되죠. 위험하다고 피해버리고 변질해 버리면 올바른 재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국민이 생각할 때는 이 나라에서 다른 기관은 다 못 믿어도 헌법재판소만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헌법재판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유일무이한 소원입니다.

면담자: 이 나라 법치주의의 최고의...

구술자: 예, 현재가 그건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임명 방식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깊이 안 생각해 봤고요. 또 하나는 임명 절차가 어떻든 일단 현재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헌법재판관이니까 출신 기관으로부터 독립해서... 우리 현실에서는 지사적인 태도를 안 가지면 일을 옳게 못 할 겁니다. 어떤 위험이나 위협이 있어도 이에 흔들리지 않는 의연한 재판관이라야 난국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면담자: 재판관님, 정말 귀하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황도연 전 재판관님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관님, 감사합니다.

구술자: 수고하셨습니다.